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헌장¹

1945년 11월 16일에 서명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프랑스, 그리스, 인도, 레바논,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등 20개국의 비준을 받아 1946년 11월 4일에 발효²되었다.

이 헌장은 19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채택되었으며,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2차, 15차, 17차, 19차, 20차, 21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1차, 40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¹ 비공식 국문 번역본

² 국내발효일: 1950. 6. 14., 관보게재일: 1953. 7. 6.

제1조(목적과 임무)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 헌장이 세계 국민들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2.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다음을 행한다.
 - (a) 모든 형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국민들 사이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약들을 권고한다.
 - (b) 아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대중교육과 문화의 보급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교육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당사국과 협력하며,
인종이나 성 또는 경제적, 사회적 구분을 두지 않은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이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 관계를 이룩하고,
세계 어린이들이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 (c) 아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을 유지 증진하며 전파한다:
세계 유산인 도서와 예술 작품, 역사적, 과학적 기념물을 보존 보호하고 필요한 국제 협약을 관련 국가들에게 권고하며,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 교류와 출판물 및 예술적, 과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물건과 기타 참고 자료의 교환 등을 포함하는 지적 활동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을 장려하고,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 또는 출판물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발의한다.
3. 이 기구의 회원국의 문화와 교육 제도의 독립, 통일성 및 결실을 많이 맺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기구는 본질적으로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2조(회원국의 지위)

1.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될 권리를 수반한다.
2.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은 이 헌장의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된 이 기구와 국제연합 간의 협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집행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의 투표로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국제 관계의 처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속령 또는 속령의 집단은 그들의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기타 당국의 대리 신청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준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준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성질과 범위는 총회가 결정한다.
4. 국제연합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당한 이 기구의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구의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 당한다.
5. 국제연합으로부터 제명된 이 기구의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이 기구의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6. 이 기구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통고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 해 12월 31일 발효한다. 이러한 탈퇴는 그 탈퇴가 발효하는 날 현재 이 기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재정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준회원국의 탈퇴 통고는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 또는 기타 당국이 대리하여 행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기구에 상주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8. 회원국의 상주대표는 이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임장이 제출된 날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한다.

제3조(제 기구)

이 기구는 총회,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4조(총회)

A. 구성

1. 총회는 이 기구의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회원국 정부는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때는 이것과,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육·과학·문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5인 이내의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B. 임무

2. 총회는 이 기구의 정책과 사업의 중요한 방침들을 결정한다. 총회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결정한다.
3.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 과학 및 인문과학과 지식의 보급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총회와 집행이사회는 이 규정에 따라 동일한 주제의 비정부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원국에게 제안할 안건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권고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국제 협약을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투표로 족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각 회원국은 권고 또는 협약을 채택한 총회가 폐회한 후 1년 이내에 그 권고 또는 협약을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5조 5.(c)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는 국제연합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과학 및 문화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이 기구와 국제연합의 적당한 당국간에 합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연합에 조언한다.
6. 총회는 회원국이 이 기구에 제출하는 위 제4항에 언급된 권고와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심의하며,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 보고서의 분석요지를 수령하고 심의한다.
7. 총회는 집행이사회를 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이사회는 권고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C. 표결

8. (a)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결은 이 헌장의 규정과 총회의 절차 규칙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다수에 따라 행한다. 다수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로 한다.
 - (b) 회원국은 체납된 분담금 총액이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 (c) 다만, 총회는 지불 불이행이 회원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D. 절차

9. (a)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기를 개최한다. 총회는 총회 자체의 결정이나 집행이사회 소집 또는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
 - (b) 총회는 매 회기마다 차기 정기회기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개최 장소는 총회가 소집할 때는 총회가 결정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다.

10. 총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회기마다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특별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기타 총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기관을 설치한다.
12. 총회는 그것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회의가 공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옵서버

13. 총회는 그 절차 규칙에 따라 집행이사회에의 추천과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총회 또는 그 위원회의 특정한 회기에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국제기구의 대표자를 옵서버로 초청할 수 있다.
14.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국제비정부기구 또는 준정부기구와의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기구들에게 총회와 그 위원회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이사회)

A. 구성

1. (a)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하며 58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총회의 의장은 직권상 고문의 자격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석한다.
(b) 회원국이 체납된 분담금의 총액이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국은 집행이사국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총회는 납부 불이행이 회원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회원국의 집행이사국 자격을 허용할 수 있다.
(c) 선출된 집행이사국은 이하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지칭한다.
2. (a) 각 집행이사회 위원은 대표자 1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교체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b) 집행이사회 대표를 선택할 때 집행이사회 위원은 유네스코 활동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행정 및 집행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표의 임기는 집행이사회 위원의 임기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각 집행이사회 위원이 임명한 교체 대표가 대표자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이사회 위원을 선출할 때 총회는 문화적 다양성과 균형 있는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야 한다.
4. (a) 집행이사회 위원은 그를 선출한 총회 회기의 종료 시부터 동 선임회기 이후 2번째 총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총회는 매 정기총회 회기 종료 시에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위원을 선출한다.
(b) 집행이사회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집행이사국의 중임위원들은 그 대표를 교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5. 집행이사회 위원이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경우 그 임기는 탈퇴가 발효되는 날 종료된다.

B. 임무

6. (a)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의사일정을 준비한다. 집행이사회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이 기구의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의 사항을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총회의 권한 하에서 행동하는 집행이사회는 총회가 채택한 사업 계획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두 정기회기 사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사업 계획을 효과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정기회기 사이에 자문이 요구되는 문제로 총회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다루어졌거나 또는 그 해결책이 총회의 결정사항에 내포되었을 때에는 제4조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7. 집행이사회는 새 회원국의 이 기구 가입 승인을 총회에 권고한다.
8.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집행이사회는 위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9. 집행이사회는 2년마다 적어도 4회의 정기회기를 갖고 의장의 발의나 집행이사회 위원 6인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기를 가질 수 있다.
10. 집행이사회 의장은 집행이사회를 대표하며 제6조 3.(b)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준비한 이 기구의 활동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의견을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고 총회의 매 정기회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에 관한 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집행이사회는 총회 회기 사이에 이 기구의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3. 집행이사회는 또한 총회 전체를 대신하여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C. 투표권

14. (a) 각 집행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b) 회원국이 체납된 분담금의 총액이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국은 투표권을 상실한다. 다만, 총회는 납부 불이행이 회원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집행이사회가 지명하고 4년의 임기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4년을 더 연임할 수 있으나 또다시 연임할 수는 없다.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행정상의 수석 임원이다.
3. (a)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은 총회와 집행이사회 및 이 기구의 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총회 및 집행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며, 이 기구의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르는 예산안을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b) 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과 집행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 수록될 기간은 총회가 결정한다.
4. 사무총장은 총회가 승인하는 직원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최고 수준의 성실성과 능력, 기술적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최우선의 고려를 하되 가급적 광범한 지리적 안배를 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5.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무는 그 성격상 오로지 국제적인 것이다. 임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이 기구 외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훈령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적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이 기구의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무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이 기구가 국제연합 내에서 공동의 업무와 직원 겸임, 그리고 직원의 교류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국내 협력단체)

1. 회원국은 교육·과학·문화와 관련한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로서는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널리 대표하는 국가 위원회의 설립이 요망된다.
2. 국가위원회 또는 국내 협력단체가 있을 경우 이들은 이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자국 대표단과 집행이사회의 대표 및 교체 대표, 그리고 자국의 정부에게 자문하고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연락기구로서의 임무를 행한다.
3. 이 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 국가위원회 활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사무국 직원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회원국의 보고)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과학·문화 활동과 관련된 법령, 규칙 또는 통계에 관하여, 그리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권고와 협약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이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1. 예산은 이 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2. 총회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되는 협정에 규정될 수 있는 국제연합과의 협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예산 또는 이 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할당을 승인하고 또 이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
3. 사무총장은 재정 규정에 따라 정부, 공적·사적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 증여, 유증 또는 보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제10조(국제연합과의 관계)

이 기구는 국제연합 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가급적 조속히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국제연합 헌장 제63조에 의거한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이 기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정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 기구 간의 유효한 협력을 규정하고 동시에 이 헌장이 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기구의 자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특히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이 기구의 예산 승인과 그 재원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국제 전문 기구와의 관계)

1. 이 기구는 그 관심과 활동이 이 기구의 목적과 관계있는 다른 정부간 전문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전반적 권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 기구와 실효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또 유효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구와 체결하는 정식의 협정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기구의 총회와 그리고 목적과 임무가 이 기구와 관련된 다른 정부간 전문 기구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자산과 활동을 이 기구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총장은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목적을 위하여 상호간에 이를 수락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기구는 회합에 상호간의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다른 정부간 기구와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계하고 있는 비정부국제기구와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 기구에 특정한 임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총회가 설립한 자문위원회에 이들 기구의 대표자가 적절하게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2조(이 기구의 법적 지위)

국제연합의 법적 지위와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은 이 기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13조(개정)

1. 이 헌장의 개정 제안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기구 목적의 근본적 변경 또는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수반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그 승인 후 회원국의 3분의 2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개정 제안의 초안은 적어도 총회의 심의 6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본 조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규칙을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해석)

1. 이 헌장의 영어와 불어의 본문은 동등하게 정문으로 간주한다.
2. 이 헌장의 해석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은 총회가 그 절차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그 결정을 위하여 위탁한다.

제15조(효력의 발생)

1. 이 헌장은 수락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수락서는 영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2. 이 헌장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여 영국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둔다. 서명은 수락서의 기탁전이나 후라도 행할 수 있다. 수락 전후에 서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수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기구로부터 탈퇴한 국가가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지 새로운 수락서를 기탁하면 된다.
3. 이 헌장은 서명국 중 20개국이 수락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의 수락은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4. 영국 정부는 모든 수락서의 수령과 이 헌장이 전항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사무총장에 통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영어와 불어를 동등하게 정문으로 하는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영어와 불어의 정문 각 1통을 작성하였다. 인증 등본은 영국 정부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